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37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오영훈·강선우·양정숙

전혜숙 • 이성만 • 강민정

박성준 • 김회재 • 박완주

김경만 • 주철현 • 김진애

오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무) ① ~ ③ (생 략)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4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	
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	1
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	
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u>인감증명서</u> 를 첨부하여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